

# 과태료 체납처분(독촉) 공시송달 공고

소방관련법 위반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1. 3. 17.

## 남 양 주 소 방 서

1. 공고기간 : 2021. 3. 17. ~ 2021. 6. 18.(3개월간)
2. 공고내용

공 고 명	과태료 체납처분 반송분 공시송달		
처분대상	성 명	주 소	반송사유
	김인*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*** **호 (동문빌)	폐 문 부재
처분사항	과태료 체납 금액		체납금액 납부기한
	문의요망(☎ 031-590-0391)		문의요망(☎ 031-590-0391)
처분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, 제24조, 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</li> <li>○ 「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2항</li> <li>○ 「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2항 제10호</li> </ul>		
문 의 처	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(☎ 031-590-0391)		
유의사항	<p>납부기한 경과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증가산금(1.2%)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되며, 기한 이내의 가산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(재산압류 등)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</p>		